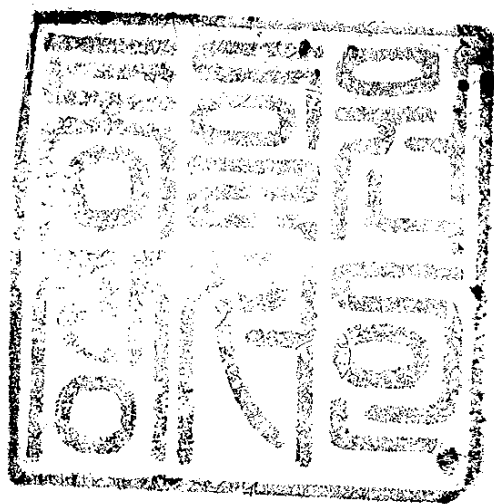


北韓物品 品質評價 及 消費者 反應



院 一 統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남북한 물자교류의 기초자료로서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자중 10대 주요품목에 대한 품질 및 소비자 반응을 수록한 것입니다.
- 이 책자에 실린내용은 북한물품반입업체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한국화학시험검사소, 대한석탄공사기술연구소,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식품검역소·수산물검사소등 전문기관의 품질분석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 남북교역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남북교역업체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바랍니다.

통 일 원
교 류 협 력 국

北韓物品 品質評價 및 消費者 反應

목
차

1. 아 연 괴/ 3
2. 연 괴/ 7
3. 빌 레 트/10
4. 시 멘 트/13
5. 무 연 탄/24
6. 감 자/31
7. 한 약 재/42
8. 생 사/46
9. 냉동명태/49
10. 어 패 류/55

부 록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61
2. 자유경제무역지대법/75
3. 외화관리법/83

1. 아 연 피

가. 일반사항

- 북한의 '91년도 아연 생산량은 165천톤이었으나 연간 생산능력은 295천톤으로 평가되고 있음.
※ 매장량 12,000천톤 (정광기준)
- 북한의 수출품 중 아연피, 연피, 철강재를 비롯한 금속류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품목으로는 아연피가 북한의 가장 큰 수출품목임.
※ 남한의 연·아연 매장량은 52,413천톤임. (연 2.98%, 아연 5.18% 품위 기준)
※ '91년도 남한의 아연정광 수입은 496천톤임.

<'91년도 국내 수급현황>

(단위 : 천톤)

공 급			수 요			
생산	수입	합 계	국내수요	수출	재고	합 계
254	21	275	238	28	11	275

※ 자료원 : 비철금속 회보

〈국내 산업별 소요비율〉

도금업	합금업	다이캐스팅	금속화학	기 타
69.3%	11%	10.4%	3.3%	6%

나. 교역현황 (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구 분 업체별	'90		'91		'92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서린금속			19,403	20,171	5,130	6,715
대 우			1,300	1,281	37,168	46,667
럭키금성상사	502	776	2,872	3,425	229	271
삼성물산			6,116	6,239	3,745	4,730
기 타	1,322	2,017	16,463	18,708	4,247	4,988
합 계	1,824	2,793	46,154	49,824	50,519	63,371

- 북한산 아연괴의 반입가격은 국제원자재 시장가격 (LME FLAT) 과 연동하여 결정되는데 수입가격은 LME FLAT + US\$50~60/MT + 9% (수입관세) 이므로 북한산 아연괴 가격 경쟁력은 높은 편임.

※ LME : 런던금속거래소 (London Metalic Exchange)
가격

- 대부분 반입물량은 북한항에서 남한항으로 직송됨.

다. 품질분석

(단위 : %)

Zn	Pb	Fe	Cd	Sn	비 고
99.978	0.005	0.002	0.005	0.01	시료 1
99.966	0.02	0.004	0.005	0.005	시료 2

※ [시료 1] : '91. 5. 24 국립공업시험원 분석 결과

[시료 2] : '91. 4. 20 한국화학시험검사소 분석 결과

- 순도 99.96% 품위의 제품이 주종이나, 제련소에 따라 Cd, Pb의 함유량이 다르며, 같은 제련소의 제품도 LOT별로 품질의 균일성이 떨어짐.
(아연 함량은 국내산과 대차없으나 매 LOT별 성분이 균일하지 못하여 99.96% 이상으로 평가되는 제품도 99.96%로 판매됨)
- 전반적으로 품질은 순도 99.99%의 국내산 및 서구산에 비해서는 떨어지나 중국산과 비교하면 양호함. 향후 불순물중 Pb와 Cd의 함량을 극소화하여야 함.

- 포장상태

- 반입물품의 포장은 1톤 단위로 철띠 포장되어 있으나 견고하지 못함. (20Kg/PC × 50개)
- 원산지 표시 : “KM D. P. R. KOREA” 각인

라. 소비자 반응

- 국내산 및 서구산과 비교할때 품질이 떨어지고 불순물 성분이 불규칙적이며 포장(Banding)이 견고하지 못함.
- 도금업종 및 Zn Oxide (아연화) 업종에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음.
- 가격면에서 상당한 잇점이 있어 계속 사용 가능함.

2. 연 귀

가. 일반사항

- 북한의 '91년도 연 생산능력은 88천톤 정도로 평가되고 있음.
※ 생산 산출량(금속량)은 100천톤, 아시아 국가중 2위
- '91년도 남한의 연 생산은 41천톤으로 주요생산업체는 럭키금속, 화성키메탈, 고려아연 등임.

〈'91년도 국내 수급현황〉

(단위 : 천톤)

공 급			수 요			
생산	수입	합계	국내소비	수출	재고	합계
41	108	149	140	6	3	149

※ 자료원 : 비철금속 회보

〈국내 산업별 소요비율〉

축 전 지	화 공	멤 납	전선피복 및 기타
62.7%	21.1%	12.7%	3.5%

※ 자료원 : 비철금속 회보

나. 교역현황 (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구 분 업체별	'90		'91		'92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럭키금성상사	268	228	300	173		
삼성물산			870	482	837	485
효성물산			547	300		
대 우					644	337
기 타			1,048	534	300	156
합 계	268	228	2,765	1,489	1,781	978

- 북한산 연괴의 반입가격은 국제원자재 시장가격 (LME FLAT) 과 연동하여 결정되는데 수입가격은 $LME\ FLAT + US\$50/MT + 9\%$ (수입관세) 이므로 북한산 연괴의 가격 경쟁력은 높은 편임.

다. 품질분석

<성분 분석표>

(단위 : %)

Pb	As	Bi	Cu	Sb	Sn
99.9365	0.0050	0.0500	0.0015	0.0015	0.0055

※ (주) 대우 분석자료

- 성분 분석상 순수한 연의 함량은 국내산과 비슷하나, 용해시 부유물이 다소 발생하고 불순물 (Impurity) 함량의 불규칙 등 안정성이 떨어져 국내산보다 품질이 떨어짐.
- 주물업체, 광면단 업체는 품질상 사용에 무리가 없으나, BATTERY 제조용으로는 부적합함.
- 포장상태
 - 포장은 1톤 단위로 철띠 포장되어 있으나 견고하지 못함. (20Kg/PC×50개)
 - 원산지 표시 : “KM D. P. R. KOREA” 각인

라. 소비자 반응

- 품질은 국내산에 비해 떨어지나 주물업체, 광면단 업체에서는 사용상 문제가 없으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북한산 사용을 선호함. (반면 불순물이 많이 발생하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결코 싸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 향후 제품의 균일성 유지가 필요함.
- 제품의 순도 및 포장상태 개선이 요망됨.
- 납기 준수가 요망됨.

3. 빌레트 (STEEL BILLET)

가. 일반사항

- 북한은 풍부하게 매장된 철광석을 기반으로 중공업발전의 모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공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주요 철강공업공장으로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황해북도 송림), 김책제철 연합기업소 (함경북도 청진), 천리마 제강 연합소 (남포시) 등이 있음. 주연료인 코크스탄이 부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전로에 의한 환원구단광 및 전력을 이용한 전기로에 의한 철강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생산수준으로 볼때 보통강은 어느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수강 중 탄소공구강, 합금공구강, 구조용 합금강, 고속도강은 수출도 하고 있으나 고도의 강도를 요구하는 특수강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성은 세계적 수준에는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교역현황 (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구 분 업 체	'91		'92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럭키금성상사	2,000	510	9,000	2,091	
효성물산	-	-	15,246	3,669	
한국제강	20,000	4,932	10,000	2,373	
한라자원	5,000	1,223	10,000	2,352	
기 타	25,536	6,853	12,101	2,898	
합 계	53,636	13,518	56,347	13,383	

- 주요 반입품 규격 : DIN17100 ST 37-2
SIZE 80, 100, 120 SQ
LENGTH : 4m, 6m
- 대부분 청진항(송림항)에서 포항(마산) 등으로 직송 됨.

다. 품질분석

〈성분 분석〉

(단위 : %)

구 분	C	Mn	Si	P	S
북 한 산	0.15 ~ 0.3	0.3~ 0.85	0.38 MAX	0.055 MAX	0.055 MAX
한국공업 표 준	-	-	-	0.05 MAX	0.05 MAX

※ 럭키금성상사 분석 자료

- 한국공업표준 (KS)에 비해 불순물 함유량이 많으나 (P.S)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문제없음.
- 제철소별 빌레트 품질의 차이가 큼.
 - 김책 제철소산 : Ingot Casting 제품으로서 철근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탄소함량이 높아 형강 및 평철제품 생산은 어려우며 철근업체에 주로 판매됨.
 - 송림 제철소산 : Continuous Casting 제품으로서 탈산등이 되지 않아 Crack이 있어 자동 Line에서 사용 불가함.

라. 소비자(제강업체) 반응

- 현재 국내산 공급이 어려워 사용중이나 국내수급상황 개선으로 국내산 공급이 원활할 경우, 전량 국산으로 대체할 것임.
- 향후 수요개발을 위해서는 규격 (SIZE)의 다양화 및 탄소함유량 (0.15~0.38%→0.15~0.24%)을 줄이는 품질개선이 요망됨.

4. 시멘트

가.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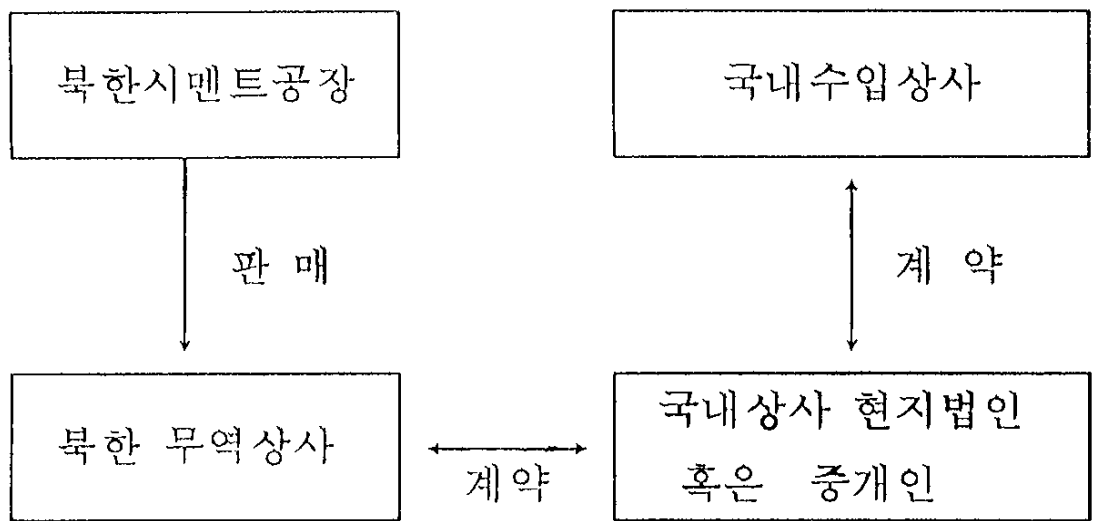
- 북한의 석회석 매장량은 약 1,000억톤으로 추정됨.
- 구식(습식)설비인 소규모 공장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음.
※ 대부분의 공장은 '50년대이전 설비임.
- '70년대이후 대규모 최신 기술 도입(서독 등)으로 생산능력은 약 300만톤을 유지하고 있음.
- 설비노후, 전력, 유류, 공장소모품 부족 등으로 가동을 저조

나. 교역현황 (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구 분 업체별	'90		'91		'92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쌍 용	5,500	232	-	-	10,000	593
대 우	-	-	-	-	425,000	21,256
력키금성상사	-	-	2,000	510	38,094	1,931
효 성 물 산	9,986	512	10,000	700	5,000	199
기 타	49,500	2,513	222,200	11,013	145,200	7,452
합 계	64,986	3,257	234,200	12,223	623,294	31,431

- '84년 수제물자로 최초로 10만톤 반입
- '90년이후 남한의 건설경기 상승으로 인해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본격적 반입
- 반입경로



- 선적항 상황 및 운송

- 전반적인 항만시설 미비 → 수출 등 물자교류 장애
- 만성적인 적체 현상
 - '80년대 이후 대외무역 확대 정책 → 주요 무역항 확장공사 부진

〈시멘트 선적항 상황〉

구분 \ 항구명	남 포 항	해 주 항
수 송 능 력	4,500톤/일	120톤/시간
시멘트 SILO	60,000톤 (15,000톤×4기)	45,000톤 (25,000톤+20,000톤)
최 대 접 안 가 능 선 박	BULK : 20,000톤 BAG : 30,000톤	BULK : 10,000톤
선 적 능 력	BULK : 400톤 BAG : 3,000톤/일	

다. 품질평가

○ 가격비교

(단위 : 톤)

구 분		북한산	중국산	비 고
반입/수입	CIF	₩41,600	₩45,500	
	관세 등		₩ 3,000	
	계	₩41,600	₩48,500	
하역료 등		₩ 8,000	₩ 8,000	
합 계		₩49,600	₩56,500	

※ 환율 1 US\$ = 784원

○ 품질상태

- 품질의 안정성 부족 (유류 · 공장소모품부족으로 인한 잦은 킬른 고장등에 기인)
- 색깔은 크링커 소성 불량으로 노랑색에 가깝거나 엷은 회색
- 응결시간이 짧아 작업성 저하
- 압축강도는 KS 규격의 최저수준에 해당

○ 포장상태

- 포장재는 폴리프로필렌 백 (중국산 수입품)이며, 포장단위는 2톤임.
 - * 실질적으로는 중량이 일정하지 않음.
- 원산지 표시 : 무표시
 - * 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MADE IN D. P. R. KOREA) 표시가능

라. 소비자 반응

- 신성콘크리트 (경기도 벽제 대자리)

- 국내산과 비교
 - 강도가 떨어짐
 - 금강표는 품질이 양호하나 사슴표는 다소 불량함.
 - 일부 물량은 색상이 노란색으로 소비자들이 기피함.

- 수입품 (중국산) 과 비교
 - 품질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강도면에서는 중국산 보다 양호함.
 - 포장상태가 중국산에 비해 불량하며 일부제품은 실중량이 기준치보다 10% 미달 발생됨. (중국산 은 평균미달이 기준치의 5%임.)

- 수입품 대체 가능성
 - 색상만 양호해지면 중국산 시멘트 대체효과 있음.

- 품질개선 요망사항
 - 색상개선과 포장상태 개선이 요구됨.

- 계속 사용여부
 - 색상과 포장상태가 개선되면 사용 가능하나, 현재는 국산제품에 비해 품질·색상·포장 등이 불량하여 사용 기피함.

- 경인레미콘 (인천직할시 가좌동)
 - 국내산과 비교

- 국산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공급이 불규칙하고 색상이 너무 밝음.
 - 일부는 강도가 현저히 떨어짐.
- 수입품과 비교
- 중국산에 비해 납기 및 포장상태가 불량
 - 품질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 가격은 저렴
- 수입품 대체 가능성
- 품질 및 가격면에서 중국산과 대체 가능함.
 - 향후 국내 건설경기 상황과 국내 시멘트 생산시설의 증설 등으로 반입가능성은 줄어들 것임.
- 품질개선 요망사항
- 색상개선과 강도개선이 요망됨.
- 계속 사용여부
- 교역초기 비교적 저렴한 해주산 사슴표 반입으로 인해 북한산에 대한 인식이 나빴으나, 금강표 위주로 반입시 점진적으로 사용이 늘어날 것임.

《첨부 1》

남·북한 시멘트 수급상황 비교

북한

(단위 : 만톤)

구 분	'88	'89	'90	'91(E)	'92(E)
생산능력	977	1,177	1,202	1,202	1,202
생 산	880	980	1,000	600	800-900
내 수	840	930	940	530	800-850
수 출	40	50	60	70	50
1인당 소비 (KG)	400	434	415	241	-

※ 자료원 : 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88-'90)

〈수 요〉

- '80년 이후 신장 추세
 - 대규모 국토 건설 : 남포감문, 30만 ha 간척사업 등
- '87년 이후 성장지속
 - 의식주 해결 : 대규모 주택 건설 (매년 15-20만세대)
 - 무역규모 확대 : 수출확대 (외화획득용 전략상품)

〈공 급〉

- 설비노후, 소규모 공장 20여개 산재
 - 생산능력 : 1,200만톤, 유희설비 : 300만톤
- 최신설비 공장 : 상원, 순천공장 (수출품 생산)
- 가동율 저하 : 구소련 경화결제 요구로 인한 석유등 유류, 원료 공급 차질
- 제3차 7개년 계획 ('87-'93) 중 1,000만톤 증설계획
 - '93년 2,200만톤 생산목표
 - 사리원에 1,500만톤급 공장증설 검토중
- * 상표 : 금강표, 사슴표, 지구표 등

〈공장별 생산능력 및 설비현황〉

공 장	생산능력 (만톤)	킬른수 (기)	P/H TYPE	조업년도	위 치	비 고
순 천	200	3	SP	1977	평안남도	금강표
상 원	200	3	NSP	1990	평 양	상원표
2.8	160	6	습식	1959	황해북도	
해 주	125	4	습식	1936	황해남도	사슴표
승호리	95	4	습식	1919	평안남도	최초의공장

공 장	생산능력 (만톤)	킬른수 (기)	P/H TYPE	조업년도	위 치	비 고
고무산	57				함경북도	
천내리	80				강 원 도	
구 장	60				평 안북도	
고 원	30				함경남도	
회 령	19				함경북도	
해 산	5				양 강 도	
기 타	71					
계	1,202	약50기				

남 한

(단위 : 만톤)

구 분	'88	'89	'90	'91	'92(E)
생산능력	2,986	3,079	3,341	4,210	4,473
생 산	2,979	3,137	3,268	3,853	4,283
수 입	18	42	380	708	600
내 수	2,620	2,821	3,399	4,407	4,620
수 출	370	334	195	167	190
1인당 소비 (KG)	624	665	793	1,019	1,057

<수 요>

- '88년 올림픽, 특수 및 수도권 신도시 건설, 주택 200만호 건설, 토지초과세 부과 등으로 인한 수요급증으로 심각한 시멘트 부족 현상 초래

- 건설경기 위축으로 '93년은 하락세가 예상(내수 4,500만톤)되나, 건설부양책 등 정책변동에 따른 증가 가능성도 있음

〈공 급〉

- 국내업체의 증설 및 수입을 통한 시멘트 부족현상 타개 노력
 - 증설량 누계 : 1,489만톤 ('89-'92)
 - 수입량 : 년 평균 433만톤 ('89-'92)

〈첨부 2〉

〈시멘트 품질 분석〉

○ 화학 성분

공장명	상 표	MgO	SO3	F-CaO	lg-loss	T.A.	비 고
해 주	사 승 표	3.1	1.3	2.4	2.0	0.78	'84. 10월 수재 물자
순 천	금 강 표	2.7	1.6	2.6	1.8	0.72	'88. 11월 홍콩 입수
상 원	상원공장	3.4	1.6	2.5	1.5	0.76	'90. 5월 반 입 품
중 국	525	2.2	2.1	1.8	1.4	0.54	'92. 7월 수 입 품
쌍 용 북평공장	쌍 용	3.4	2.2	1.2	1.4	0.68	'91년 평균
K S 규 격		MAX 5.0	MAX 3.5	-	MAX 3.0	-	

○ 물리특성

공 장 명	상 표	분 말 도		용 결 시 간		압 축 강 도		안정도
		44U	BLAINE (CM ² /G)	초결 (분)	종 결 (시간 : 분)	7 일	28일	
해 주	사 승 표	27.0	3,450	160	4 : 45	138	305	0.76
순 천	금 강 표	21.6	3,424	210	6 : 20	119	302	0.51
상 원	상 원	20.1	3,060	215	6 : 25	129	332	1.78
중 국	525	16.0	3,319	273	7 : 24	265	380	-
쌍용복평	복평내수	11.8	3,200	253	6 : 53	284	376	0.10
K S 규 격		-	MIN 2,800	MIN 60	MAX 10	MIN 200	MIN 290	MAX 0.8

5. 무연탄

가. 일반사항

- 북한의 석탄 매장량은 약 2,520백만톤이며 이중 무연탄 매장량은 약 89%에 해당하는 2,240백만톤인 것으로 추정됨. 무연탄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 약 80Km의 평남남부 탄전지대와 북부탄전지대인 덕천, 개천, 북창, 운산 및 구양등지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밖에 함남고원, 강원도 문천일대에도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북한의 3대 탄광〉

탄 광 명	소재지	대표광물	연간생산능력	특 징
신 창 탄 광	평 남	무 연 탄	300만톤	
아오지탄광	함 북	유 연 탄	200만톤	갈 탄
안 주 탄 광	평 남	”	200만톤	”

- 생산규모는 유·무연탄 합하여 '90년 현재 약 4,050만톤으로 남한의 약3배이며 생산량이 점차 증가함.

- 무연탄 중에는 열량이 높은 것도 상당량 생산되어 상품성을 가지고 있으나 유연탄의 대부분은 휘발분이 20%를 넘지 못하여 상품성이 떨어짐.

※ 산업용으로는 휘발분 30~40%수준의 유연탄이 가장 적합하며 상품가치가 있음.

- 북한에서는 외화부족에 따른 원유 도입 여건이 좋지 않아 에너지원으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대외교역규모는 중국산 코크스용탄과 연계교역용으로 수출되는 200만톤, 일본의 제철회사에 수출되는 50만톤 등 총 250만톤 수준으로 추정됨.

나. 교역현황 (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구분 업체별	'89		'90		'91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럭키금성상사	-	-	30,000	1,200	100,000	400,000
삼성물산	-	-	15,000	720	70,000	2,800
쌍 용	-	-	20,000	859	-	-
천지무역	-	-	-	-	30,000	1,200
효성물산	20,000	1,050	-	-	-	-
합 계	20,000	1,050	65,000	2,779	200,000	800,000

- 북한의 무연탄 수출능력은 중국, 일본 등지로 약 250만톤 정도이나 최근에는 대 중국교역량이 감소하여 상당한 수출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산 무연탄은 당초 홍콩 등 제3국을 통한 삼각무역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에 의거 물물교환의 성격을 갖는 연계교역, 또는 남북 당사자 간의 직교역 형태로 반입되고 있음.
- 북한의 수출기관은 대 공산권 수출을 담당하는 조선석탄수출입회사가 있고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는 여러회사를 통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북한의 외화사정악화로 제3국과 대외교역시 경화결제에 곤란하여 무연탄 등 1차산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따른 제3국을 통한 북한산 무연탄 OFFER도 상당히 있음.
- 선적여건
 - 북한의 무연탄 수출항구로는 남포항, 청진항 등으로 주로 남포항을 통하여 수출되고 있음.

- 남포항의 시설은 약 20,000톤급 이하 규모의 선박만 접안이 가능하여 용선비용이 많이 들어 비경제적임.
- ※ 제3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30,000톤급이상 접안이 가능해야 대외 교역상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선적여건도 좋지 않아 채선발생 등으로 다소의 비용부담을 안고 있음.

※ 남포항 무연탄 취급능력

수 심	접안능력	하역량	저탄능력
10M	약 20,000톤	3,000톤/일	약80,000톤

※ 남포항을 통한 무연탄 수출량 : 연간 약 50-60만톤,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철도로 수송

다. 품질평가

- 북한산 무연탄의 도입가격은 여타지역보다 다소 낮은 가격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내국간 거래로 간주 관세(1%)를 면제받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품질은 대체적으로 여타의 외국산 무연탄보다 국내탄과의 혼합성이 좋아 연탄제조용으로 적합하나 다른 외국산 무연탄에 비하여 열량이 낮은 편이고 비중도 높아 실수요자(연탄 제조업자)의 호응도가 다소 미흡한 약점도 지니고 있음.

〈비 교 표〉

구 분	가격 (USD/톤)	열 량(Kcal/Kg)	비 중
북 한 산	40 C&F수준	약 5,900	약 1.19
외 국 산	41-45 C&F수준	약 6,300	1.12-1.16

- 주) · 열량이 높으면 가격이 낮은 국내생산 저질탄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 원가절감(연탄기준 열량 : 4,500 Kcal/Kg)
- 비중의 차이로 톤당 연탄생산량이 약 5-15장 차이가 생겨 경쟁력 다소 미흡. (비중이 낮을수록 연탄 생산개수 증가)

〈성분 분석표〉

휘 발 분 (%)	고정탄소 (%)	발열량(Kcal/kg)		절유황 (%)	전수분 (%)
		기전	건 식		
5.41	73.34	5,910	6,110	0.35	7.23

※ '92 럭키금성상사 반입분 분석결과임.

라. 소비자 반응

○ 반입여건 악화

- 최근들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내에너지 소비 패턴이 석유, GAS 등 청정연료로 전환됨에 따라 '86년을 정점으로 하여 소비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
- 국내 석탄산업 합리화로 탄질도 많이 좋아져 외국 무연탄을 혼합하지 않아도 연탄의 기준열량인 4,500Kcal/Kg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외국산 무연탄의 도입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소비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86	'87	'88	'89	'90	'91
전체소비	26,927	26,321	25,643	22,799	20,975	17,177
민수용	24,252	23,582	22,928	20,054	18,776	14,996
비민수용	2,675	2,739	2,715	2,745	2,199	2,181

○ 통신제약

- 정치·경제여건상 아직 통신여건이 원활하지 않아 홍콩, 중국등 제3국 경유가 불가피함에 따른 업무 연락 등이 신속하지 못함.

○ 수송여건 열악

- 항구사정이 좋지 못하여 해송운임이 상대적으로 높아 FOB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C&F 가격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6. 감 자

가. 일반사항

- FAO 자료에 따르면 '90년 북한의 감자 생산량은 2,100천톤으로 남한의 371천톤보다 5.6배 이상 생산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92.11월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연구기관의 북한자료를 종합분석, 북한의 서류 (고구마, 감자) 생산량이 373천톤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이는 북한이 '84년이후 곡물생산량을 일체 발표하지 않고 있어 북한이 제공하는 생산통계를 수정없이 발표하는 FAO 자료는 실제보다 과다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남북한 감자 생산량 비교〉

구 분	년도	남 한	북 한
재배면적(1,000ha)	'88	22	152
	'89	28	155
	'90	21	159

구 분	년도	남 한	북 한
단 수 (kg/ha)	'88	19,686	12,933
	'89	22,412	13,226
	'90	17,667	13,249
생산량 (천톤)	'88	424	1,975
	'89	629	2,050
	'90	371	2,100

※ 자 료 : FAO PRODUCTION YEARBOOK 1990

나. 교역현황 (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구 분	'90	'91	'92	합 계
수 량	12,500	7,000	2,500	22,000
금 액	4,021	1,658	800	6,479

- '90년에는 국내 감자생산량이 전년대비 30% 감소되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북한산 감자 12,500톤을 반입하였고 '91~'92년에도 계속하여 9,500톤이 승인되므로써 남북 농산물교역에 있어 대표적인 품목으로 부상되었음.

- 감자의 선적항은 남포항, 청진항, 신의주항 등이 주로 이용되나 부두체화 등으로 선박접안에 2-3일 소요되고 있으며 선적작업도 원활치 못함. 특히 북한항 입항후 국내와의 교신이 불가능하여 출항시까지 선적 상황등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 12월 이후 반입시는 북한전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눈, 비등이 자주 내려 선적작업 중단과 냉해피해 등을 입기 때문에 품위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함.

- 감자의 빙결점은 -0.7°C 이므로 북한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12월~2월중에 반입시는 냉해피해에 주의하여야 함.

- 포장상태

- 포장재는 P.P 포대와 황마대를 혼합사용하고 있는데 원활한 통기성 확보와 보온을 위해서는 황마대 포대가 유리함. P.P 포대의 경우 통기성과 보온성이 좋지 못하여 부패, 손실율이 높았음.

- 반입 및 유통경로

- 반입경로

북한산 감자의 반입경로를 보면 선적항으로는 남포(3회), 청진(3회), 신의주(1회), 도착항은 인천(2회), 부산(3회), 군산(2회)이며, 남포선적시는 인천이나 군산항, 청진 선적시는 부산항으로 도착하였으며 해상운송은 중국, 일본, 스웨덴, 파나마 등의 제3국적 선박이 이용되었음.

- 국내유통

국내유통경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반입분(인수품 포함)은 전국도매시장 상장판매 또는 공매에 의하였으며, 민간업체의 반입분은 도소매상에게 직접 판매되었으며 일부 품위저하품은 전분가공공장에 판매되었음.

다. 품질분석

- 감자크기

- 국내산과 비교시 북한산 감자는 대체로 작았으며 100g-130g이 대부분이었음. 감자크기별로 선별 포장하지 않아 소량구도 혼입되어 있어 상품성 저하

- 위 결과를 분석하면 감자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전분을 저장하는 Mechanism에 의하여 전분 및 기타물질을 생산하고 있는데 수확된 감자의 물성이 틀리는 주된 이유는 품종과 산지에 따라서 다른 성장속도를 가지기 때문임.
- 대체로 일교차가 심하고 재배기간이 길면 감자종의 전분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거된 북한산 감자의 전분함유량은 국내의 제주산과 비슷함을 보임.
 - ※ 품위저하품에 대한 전분함유량 분석결과는 6-8% 수준이었음.
- 이는 북한의 재배조건이 제주도에 비하여 기후환경이 좋다고 예상되지만 실제 전분 함유량이 낮은 이유는 감자의 품종이 좋지못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치 못한테 있는 것으로 보임.
- 풍미는 국내산보다 좋지 못함은 품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직접적으로 감자전분의 함유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전분의 입도 및 점도 비교표〉

산 지	입도분포 (m)	평균입자 (m)	평균점도 (B.U)
제 주 산	10 - 60	20	1,100
강 원 산	30 - 80	30	1,300
북 한 산	10 - 40	15	750
외 국 산	40 - 100	40	1,900

※ 외국산은 네덜란드 제품임.

〈전분의 물리적 성분 비교표〉

(단위 : %)

산 지	평형수분율	단 백 질	지 방	회 분
제 주 산	17.5	0.07	0.06	0.3
강 원 산	18.0	0.06	0.08	0.3
북 한 산	16.5	0.10	0.07	0.2
외 국 산	19.0	0.04	0.05	0.1

- 감자에서 추출된 전분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함유되는 물질은 비슷함. 그러나 전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평형수분율과 점도가 북한산이 가장 뒤떨어짐.

〈전분 생산 수율 비교표〉

산 지	실제 수율 (%)	비 고
제 주 산	10.4	1992년 봄
강 원 산	11.9	1991년 가을
북 한 산	6.4	1991년 겨울

○ 종합평가

- '91년 및 '92년도에 반입된 북한산 감자를 전분으로 가공한 결과 실제 전분 생산량의 수율은 6.4%에 불과하였으며 국내감자의 전분 생산수율은 평균적으로 11% 정도임. 북한산 감자의 전분생산수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그당시 감자의 보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전분을 추출하여 가공을 하지 않으면 사용치 못할 정도로 부패된 제품이었기 때문임.
- 북한산 감자도 저장, 운송과정에서 주의하여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분을 추출한다면 국내산 감자전분 생산수율인 11% 내외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북한산 감자의 반입시는 저장상태, 수확시기, 운반조건 등에 매우 유의해야 할 것임.

- 감자의 성분분석 비교치는 비교적 감자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을 샘플로 사용하였으며 대체로 감자는 보존조건에 따라서 물성의 변화요인이 많은데, 실험실에서 수거된 감자의 원료는 국내산의 것은 보존기간이 짧은 것을 사용하였으므로 북한산 감자도 보존기간이 짧은 것의 샘플을 사용한다면 상기의 분석결과가 달리 나올수 있을 것임. 왜냐하면 감자는 살아있는 생물이므로 보존기간 및 수송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동안 제품의 질 저하가 일어나서 전분의 함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임. 그러므로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같은 계절에 수확된 제품을 수거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수확된 후 곧바로 전분을 추출하는 우리나라의 감자와 북한산 감자와의 단순 물리적 비교는 불가능하며 여러요인으로 오차가 많으므로 대표성을 띤 비교는 어려운 실정임.
- 결론적으로 북한산 감자의 반입을 가정한다면 단지 식용으로서는 품미가 국내 강원도 고냉지 제품보다 질이 뒤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북한산 감자의 품종개량이 요구되며, 전분 가공만을 가정하여 감자를 반입한다면 전분의 생산수율 및 기타 물성에서 국내산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여겨짐.

라. 소비자 반응

- 국내산과 비교시 크기가 작고 눈의 위치가 깊어 껍질 제거시에 손실이 많고 담백한 맛이 적으며 대다수 동절기 냉해피해 등으로 품위가 나빠 소비자의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음식점등에서 많이 소비되었음. 판매가격은 국내산 감자의 약 30% 수준이었음.

〈국내 판매가격 비교〉

(전국평균, 중품 : 원/kg)

구 분	'91.11	'91.12	'92.1	'92.2	'92.3	'92.4
국내산	766	821	827	869	960	1,062
북한산	-	-	297	371	371	372

※ 자료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부

- 북한산 감자가 국내산 보다 품위는 좋지 않았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국내 감자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음.
- 품위가 국내산 보다 떨어지는 것은 종서용 감자를 별도로 재배 공급치 않고 재배농장 수확품을 종자용으로 계속 사용 우수한 품종을 생산, 관리치 못하고 총

분한 영양을 공급치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되므로 단기간에 개선될 수는 없을 것이나 반입시에
냉해피해 등을 예방키 위한 반입시기 및 보관관리상
주의가 요망됨.

- 장기적으로는 우수품종 보급, 재배기술 교환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남북경제
교류의 제도적 정착이 요구됨.

7. 한약재 (백출과 창출)

가. 일반사항

- 백출과 창출은 대한약전에 수록되어 있는 중요한 약재로서 양한방을 통하여 그 소비량이 막대한 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는 도저히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많은 물량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산도 대량 반입되고 있음.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백출과 창출의 기원식물〉

구분	남한	북한
(1)	삼주 : <i>Atractylodes japonica</i> = <i>A. ovata</i> = <i>A. lyrata</i>	삼주
(2)	용원삼주 : <i>Atractylodes koreana</i>	조선삼주
(3)	당삼주 : <i>Atractylodes chinensis</i>	

※ 남한 : 식물도감(이창복, 정태현), 북한 : 동의학사전

- 북한의 동의학사전에는 삼주(1)와 용원삼주(조선삼주)(2)의 2종이 수록되어 있으나 용원삼주(조선삼주)(2)는 분포지역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양도 매우 적고, 당삼주(3)는 정태현씨 식물도감에 평안북

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의 동의학사 전에는 수재되어 있지 않음.

- 이는 용원삼주(2)나 당삼주(3)는 분포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량은 되지 못함.
- 남북한에는 삼주가 널리 분포되어 있고 그 양도 많으므로 대한약전에는 삼주(*Atractylodes japonica*) 근경의 육질이 많은 부위를 백출로, 육질이 적고 가늘고 긴 부위를 창출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중국은 백출과 창출의 기원식물이 각각 다름)

나. 교역현황 (승인기준)

○ 백 출

(단위 : 톤/천불)

구분 업체별	'91		'92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선 경	80	236	150	555	
한중경제교역	85	335	—	—	
효성물산	30	117	100	300	
정진한방	—	—	100	230	
기 타	157	660	194	618	
합 계	352	1,348	544	1,703	

○ 창 출

(단위 : 톤/천불)

구분 업체별	'91		'92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선 경	—	—	50	80	
한중경제교역	200	420	—	—	
효성물산	20	39	100	150	
정진한방	—	—	200	240	
기 타	150	410	230	476	
합 계	370	869	580	946	

다. 품질분석

- '92.11월 인천항으로 직반입된 북한산 백출과 창출에 대하여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대한약전에 규정된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성상, 확인시험, 건조감량, 순도시험, 회분, 산불용성회분, 정유 함량등이 적합하였으며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백출 약전규격 시험결과표〉

항 목	기 준 치	결 과
확인시험	-	적 합
순도시험	-	적 합
회 분	7.0% 이하	5.3%
산불용성회분	1.0% 이하	0.9%
정유함량	0.7ml이상	1.3ml

〈창출 약전 시험결과표〉

항 목	기 준 치	결 과
확인시험	-	적 합
회 분	7.0% 이하	5.2%
산불용성회분	1.5% 이하	0.8%
정유함량	0.7ml이상	1.0ml

- 또한 북한산 백출·창출을 강원도 영월에서 채집한 남한산 백출·창출과 n-Hexane 추출방법에 의한 TLC pattern을 비교한 바 동일한 Pattern으로 나타남.

라. 소비자 반응

- 북한산 백출·창출의 성분은 국내산과 유사하여 성분, 색깔 등이 중국산에 비해 양호하나 크기별 선별, 포장에 잘되어 있지 않음.
- 백출, 창출이 혼적된 경우도 간혹 발견되므로 세심한 선별작업이 필요함.

8. 생 사(RAW SILK)

가. 일반사항

- 북한산 생사는 전량 수출용 원자재로 반입되어 원단으로 가공수출되는데 현재까지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생사는 청천강 합영회사, 평양 제사공장등의 제품임.

나. 교역현황 (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구분 업체별	'90		'91		'92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삼양물산			14.3	515	13.2	410
신화직물			20.8	767		
동아견직			5.8	212		
낙양직물	1.2	44	1.2	44		
기 타	5.7	205	12.1	445	4.8	135
합 계	6.9	249	54.2	1,988	18.0	545

- 외화 획득용 생사의 경우에는 실수요자만(제사업체, 제직업체) 반입이 가능하며, 반입 신청시 섬유직물조합등의 추천이 있어야 함.

다. 품질분석

- 생사는 농산물인 천연섬유로 현물의 상태가 반입 소요기간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제사공장별 검사기준에 대한 신뢰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청천강 합영회사의 검사기준은 비교적 정확하나 여타 회사의 경우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북한산의 경우 한 등급 낮추어 판매됨.
- 타래당 중량이 100g으로 국제규격인 200g에 미달되어 작업 효율성이 떨어짐. (다만 청천강 합영회사 제품은 200g임)
- 색택은 황갈색을 띄고 있으며 고착생사가 많음.
- 대부분 30kgs BOX에 포장되어 반입됨.

라. 소비자 반응(견직업체)

- 전반적으로 품질의 안정성이 미흡함. (좋은 품질의 물품과 나쁜품질의 물품이 불규칙하게 공급됨.)

- 그러나 이러한 품질의 문제는 단순한 품질 자체로만 판단될 것이 아니라 가격과 연결되어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로 볼때는 북한산 생사의 품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품질에 상응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국제 시장 가격변동시 이에 상응하는 가격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특히 국제가격 하락시 조정에 장기간 소요됨.

9. 냉동명태

가. 일반사항

○ 생산현황

- 저수온 중저층 어류인 명태는 지리적으로 남한보다는 북한 동해안에 많이 회유하므로 11월경부터 동절기에 걸쳐 다량 어획되는 것으로 연간 약10만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 최근에는 북한의 극심한 유류부족난으로 출어가 제한되어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되었음.

○ 수급현황

- 명태는 북한의 주요 식량자원으로서 군납용 및 민간배급용으로 사용되나 주문만 있으면 외화획득용으로 우선 수출하고 있음.

○ 수출현황

- 북한의 냉동명태 수출물량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품질이 양호한 포란태 및 명란등은 주로 일본에 수출되고, 중국에도 일부 수출되어 왔으나 최근 몇년 동안 남한에 다량 반출하고 있음.

〈국내명태 생산현황〉

(단위 : 톤)

구 분	'86	'87	'88	'89	'90
연근해산	46,890	20,162	13,348	15,786	9,798
원양산	539,612	410,625	299,565	361,177	311,703
합 계	586,502	430,787	312,913	376,963	321,501

○ 국내 수급현황

- 국내 연근해산 명태의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가공식품등의 개발로 연육 등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수요에 충분이 공급이 되지 못하여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국내 수출입 현황

- 수입 :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수입이 제한되며 필요에 따라 국내 수급조절용으로 수산업 협동조합을 통하여 일부 수입되고 있음.
- 수출 : 국내가격이 고가인 관계로 국내산 수출은 하지 않고 수출용 원자재로 명태를 수입하여 가공처리(연육 및 FILLET)한 후 재수출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국내 인건비 상승과 수출단가 하락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수출량이 많지 않음.

나. 교역현황 (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구 분 업 체	'90		'91		'92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력키금성상사	-	-	1,000	350	-	-
롯데상사	-	-	-	-	2,000	248
풍양산업	2,000	560	850	42	-	-
시 월	-	-	1,000	470	1,000	380
기 타	4,500	1,230	15,167	6,708	8,500	4,444
합 계	6,500	1,790	18,017	7,570	11,500	5,072

- 북한산 명태의 반입가격은 원양산 수입품의 70~80% 선이나 주로 연안 명태로 사이즈가 작고 선도 및 포장상태가 불량하고, 연육 및 필렛가공 수율은 수입품의 80~90% 수준에 불과함.
- 북한산 명태의 국내판매 가격은 소련산등 원양산과 비교할때 70~80% 선이나 싸이즈가 작고 선도 및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저가에 판매됨으로 결국은 품질대 가격 비교시 저렴하다고 볼 수 없음.

〈가 격 비 교〉

구 분	북 한 산	수 입 산
수 입 가	US\$300 — 400	US\$500 — 600
국내 판매가	US\$200 — 300	US\$500 — 700

※ 1톤당 단가임.

- 국내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가공식품 등의 개발로 명태 연육 등의 수요량이 급증하여 가격안정차원에서 수입이 불가피함.

다. 품질평가

- 규격 : 10KG, 25KG, 50KG 등으로 일정치 않음.
(25KG : 53CM × 53CM × 10CM)
- ※ 국내 : 18KG (58CM × 36CM × 8CM)
- 팬 형 태 : 팬 모서리 요철이 심하고 운반 작업시 팬이 쉽게 깨짐.
- 색 채 : 광택이 없고 색이 변해 있음.
- 배열상태 : 어체를 가지런히 하여 배열이 되어 있지 않고 어체가 꼬부라져 있음.

- 선 도 : 어획후 선상에서 동결을 하지 않고 육상에 운송하여 장시간 방치후 동결함으로 어체가 상하고 선도도 불량함.
- 용 도 : 어체가 꼬부라지고 육질선도가 불량하여 시장유통 불가능하나, 건조하여 북어채등으로 판매는 가능함.
- 판 매 : 품질불량으로 수요가 적어 판매가 용이치 않음.

라. 소비자 반응

- 품질면
 - 품질불량으로 일반시판이 불가능하며, 가공용으로도 어체가 꼬부라져 처리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크고 수율이 낮아 사용을 기피함.
- 가격면
 - 단위 중량당 원물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불량으로 사용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고 제품의 품질이 떨어져 가격 불문하고 사용을 기피함.

○ 기 타

- 반입하고자 하는 현지물품의 품질확인 불가능으로
간접정보나 간접 확인으로는 상당한 오차 발생
- 적기공급이 되지 않으며 계획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
하기가 매우 어려움.
- 현지 통신 불가능으로 진행사항등을 파악하기 어려
움.
- 상품의 품질에 따라 차등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규격
과 품질에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을 요구하며 수시로
가격변동폭이 심함.
- 클레임 처리가 어려움.

10. 어패류 (조개류)

가. 일반사항

- 북한에서 어패류의 생산은 특정품목이 대량생산되기 보다는 다품종이 소량 생산되고, 대외무역에서 패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며 대부분 북한자체 수급을 희생하는 출혈수출로 이루어지고 있음.

나. 교역현황 (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구분 업체별	'91		'92		비 고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시 월	48	76	58	108	
체이스 INT	6	7	112	335	
해우수산	100	145			
효원물산	300	330	1,410	4,483	
기 타			25	26	
합 계	454	558	1,605	4,952	

- 제3국산과 비교시 품질면에서 다소 뒤떨어지지만, 비과세 혜택으로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음.

- 북한산 냉동패류 반입시 생균수 초과(ml당 10만마리 이상)로 수산물 검사소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바, 이는 냉동시 사용하는 용수가 오염원인 것으로 판단됨.

다. 품질평가

〈염장조개〉

- 북한산 염장조개는 국내의 젓갈보다 염처리가 많이 되어 장기간 보관에는 유리함. (조개:소금, 1.0:1.5)
- 주문품목뿐만 아니라 유사패류가 혼합되어 있으나, 염장조개살의 빛깔이나 맛은 국내산과 별차이가 없음.

〈건바지락〉

- 바지락 살에 이물질 사분이 함유되어 있어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짐.
- 국내산 바지락보다 크기가 작으며, 선별이 잘되어 있지 않아 상품가치가 떨어짐.

〈냉동소라〉

- 맛은 국내산과 별차이가 없으나 소라의 크기는 대체로 작으며, 크기 또한 균등치 않음.

- 냉동소라에 소량의 소라와 비슷한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품질관리의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음.

라. 소비자 반응

- 패류의 크기가 대체로 작고 크기별 선별작업도 되어 있지 않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적음.
- 주문한 품목과 비슷한 패류가 섞여있어 비전문가가 볼때는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향후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이 반입이 되어야 함.
- 포장은 견고하여야 하며 개체 자체의 크기에 따라 선별 포장의 필요함.

부 록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1.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2. 자유경제무역지대법
3. 외화관리법

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 1 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 변경, 취소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의 법인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기 계산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 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재정부기 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라 보관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 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 정형에 대한 감독 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6 조 이 법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7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 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

제 2 장 기업소득세

제 8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우리나라 안에서 얻은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에 지사,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 것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 9 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10 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분기소득세 예정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며, 년도가 끝난후 2개월 안으로 연간 소득세납부서와 재정

부기결산서를 내야 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연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예정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에 하며, 연간종합계산은 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 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 납부한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 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청산이 끝난 날 부터 15일 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로 한다.

제13조 외국기업이 공화국 영역 안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4조 외국기업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1. 다른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와 국가은행

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나라의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10년 전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3.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4.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 16조 외국투자자가 기업에서 얻은 리윤을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소득세액을 바친다.

제 3 장 개인소득세

제 17조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

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영역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도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18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배당소득,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4. 리자소득,
5. 임대소득,
6. 재산판매소득,
7. 증여소득,
8. 개인기업소득

제19조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 로동보수액이 2천원 아래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대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이 법 부록 2에서 정한대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5%로 한다.

제20조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 초과루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21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증여에 의한 소득,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2조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고정재산 처음 값의 2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금을 제공한 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한다.
공화국 은행에 저축성 예금을 한 돈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의한 리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 달 10일 안으로,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다음 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3.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해당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 4 장 재산세

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다.

제26조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 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등록취소 수속을 한다.

제27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3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29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 달 부터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0조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0일 안으로 재산소유자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 5 장 상속세

제31조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

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제32조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33조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제34조 상속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4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35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6조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으로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6 장 거래세

제37조 생산물 판매와 봉사를 하는 외국 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제38조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 판매에 의한 수입금
2. 상업부문에서는 상품판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봉사수입금

제39조 거래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5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40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생산물 판매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상업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상품판매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봉사수입금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1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판매자가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각종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봉사기관이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2조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거래세를 감면한다.

1.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50%로 한다.

제 7 장 지방세

제43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리용세가 속한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

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바쳐야 한다.

제45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소 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 수입으로 한다.

제46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 로임 총액에 1%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거주한 외국인이 바치는 도시경영세는 월 수입에 1%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4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기업이나 광업권, 어업권 같은 것을 등록할 경우와 기술자격면허증 같은 증서를 받을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바쳐야 한다.

제48조 등록면허세는 건당 정해진 세액을 해당 등록단위와 면허증 발급단위가 받아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9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 리용세를 바쳐야 한다.

제5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1조 자동차 리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자동차 리용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

지 않는 기간에는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한데 따라 자동차 리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52조 등록면허세와 자동차 리용세의 세액은 이 법 부록 6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 8 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53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5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물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배까지 물린다.

제55조 이 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6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소청원은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57조 재정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의 내용을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록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률표>

월 로동보수액 2천 1원부터 3천원까지 세를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월 로동보수액 3천 1원부터 4천원까지 세를 40원 더하기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월 로동보수액 4천 1원부터 5천원까지 세를 90원 더하기 4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월 로동보수액 5천 1원부터 6천원까지 세를 150원 더하기 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월 로동보수액 6천 1원부터 7천원까지 세를 220원 더하기 6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

월 로동보수액 7천 1원부터 8천원까지 세를 300원 더하기 7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

월 로동보수액 8천 1원부터 9천원까지 세를 390원 더하기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월 로동보수액 9천 1원부터 1만원까지 세를 490원 더하기 9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월 로동보수액 1만 1원 이상은 세를 640원 더하기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부록 2. <증여에 의한 소득세율표>

증여소득액 1만 1원부터 2만원까지 세율 5%,
증여소득액 2만 1원부터 4만원까지 세율 10%,
증여소득액 4만 1원부터 8만원까지 세율 15%,
증여소득액 8만 1원부터 20만원까지 세율 20%,
증여소득액 20만 1원부터 40만원까지 세율 25%,
증여소득액 40만 1원부터 80만원까지 세율 30%,
증여소득액 80만 1원 이상은 세율 35%.

부록 3. <재산세의 세율표>

건물의 세율은 등록값의 1%,
선박의 세율은 등록값의 1.4%,
비행기의 세율은 등록값의 1.4%.

부록 4. <상속세의 세율표>

상속액 20만 1원부터 35만원까지 세율 6%,
상속액 35만 1원부터 60만원까지 세율 8%,
상속액 60만 1원부터 80만원까지 세율 10%,
상속액 80만 1원부터 120만원까지 세율 12%,
상속액 120만 1원부터 250만원까지 세율 14%,
상속액 250만 1원부터 400만원까지 세율 16%,
상속액 400만 1원부터 800만원까지 세율 18%,
상속액 800만 1원부터 2천만원까지 세율 20%,
상속액 2천만 1원부터 5천만원까지 세율 25%,
상속액 5천만 1원 이상은 세율 30%.

부록 5. <거래세의 세율표>

생산부문의 세율은 생산물 판매액의 1.5%부터 20%까지,
술, 담배와 같은 제한하는 상품은 21%부터 60%까지,
상업부문의 세율은 상품판매액의 2%,
봉사부문의 세율은 봉사수익금의 2%로부터 4%까지

부록 6. <지방세액표>

1. 등록면허세

1) 기업등록,

설립등록 세액 건당 500원부터 1천원까지,

변경등록 세액 건당 40원,

취소등록 세액 건당 40원

2) 광업권 등록

처음등록 세액 광구당 1,200원,

변경등록 광구당 10원,

취소등록 광구당 10원

3) 어업권 등록

처음등록 세액건당 1천원,

변경등록 건당 10원,

취소등록 건당 10원

4) 기술자격 면허증 발급

세액 건당 20원부터 1천원까지

2. 자동차 리용세

승용차 세액 대당 50원, 버스 12석까지 세액 대당 90원,
13-30석 세액 대당 100원, 31석이상 세액 대당 120원, 화물
자동차 세액 적재톤당 20원, 특수차 세액 대당 50원, 자동차
전차 세액 대당 20원.

2.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 1 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 무역활동을 진행한다.

제 3 조 국가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지도한다.

제 4 조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제 6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

*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과 규정에 준한다.

제 7 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 장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

제 8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속한다. 대외경제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 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 지대당국은 현지 집행기관이다.

제 9 조 대외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 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을 세운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 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한다.
3.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 10 조 대외경제위원회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투자 승인 신청을 받으면, 해당 투자의 대상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부, 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준다.

제 11 조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

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

제12조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주민행정, 도시경영을 비롯한 행정경제사업을 한다.
2.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인신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지대의 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4. 모든 투자신청을 접수하며 총투자액이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2천만원까지의 대상과 그 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5.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6. 투자가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
7. 토지와 건물을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다.
8.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제공한다.
9. 이밖에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고 관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13조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은 투자 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 안에 기업의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가 승인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
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 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
관을 운영한다.

제16조 지대당국은 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대당국의 대표, 해당기관, 기업소 대표와 외
국투자가대표로 구성되며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협
의 협조한다.

제 3 장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여오
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
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로 내갈 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
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의 승인밑에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단독으로 또는 외국투자가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
로 투자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과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유
경제무역지대 안에 경제무역활동을 위한 지사, 대리점, 출장
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필
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밑에 임차기

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지대 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로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자, 고급 기능공을 지대 로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대당국, 대외경제부서와의 합의밑에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한다.

제2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2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 밖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지대 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 4 장 관 세

제25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2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여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나라의 무역화물

제2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나라의 다른지역에 팔기위해 내가는 경우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 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 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은 세관의 검사문건과 상품의 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통 화, 금 융

제30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류통화폐는 조선 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 원 또는 전환성 외화로 할 수 있다.

조선 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 원과 외화로 산 조선 원은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33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3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제 6 장 담보 및 특혜

제35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 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제3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37조 경영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38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다.

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제40조 외국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 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41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

제 7 장 분쟁해결

제4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이 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 3 국의 중재기관에서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3. 외화관리법*

제 1 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수입을 높이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 3 조 외화에는 전환성 있는 외국화폐, 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성 예금증서를 비롯한 외화 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같은 귀금속이 속한다.

제 4 조 국가는 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공화국 영역 안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장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 업무를 하는 전문 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 원과 바꾸어야만 쓸 수

*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있다.

외화의 사고 팔기와 저금, 예금, 저당은 외국환자 업무를 맡은 은행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 7조 조선 원의 내국환자 시세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제 8조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사이에 결제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외화가 아닌 다른 외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

제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할 수 있다.

제 10조 이 법은 외화를 리용하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외화의 리용

제 11조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1.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무역 밖의 거래
3. 은행에서 조선 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자본거래

제 12조 대외경제 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송금, 대금청구, 지불 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 13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되는 외화를 조선 원으로 바꾸어 자기의 돈 자리에 넣어야 한다.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만

써야 한다.

제14조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화국 국민은 외화를 국가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보유하며, 그 기준이 넘는 외화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팔거나 예금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인은 국외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우리나라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팔 수 있다.

제17조 은행은 외화예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해당한 리자를 계산하여 준다.

제18조 공화국 령역 안에 상주하는 다른나라의 대사관, 령사관, 무역대표부 같은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우리나라의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화 리용에 대한 감독 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외화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연간 외화재정상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 3 장 외화의 반출입

제22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다.

제23조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 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 범위 안에서만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갈 수 있다.

제2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당 문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6조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들여왔던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 안에서만 내갈 수 있다.

제27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영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 영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 4 장 제 재

제29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긴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리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을 몰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30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겨 외화적 손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킬 수 있다.

제31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과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北韓物品 品質評價 및 消費者 反應

인 쇄 : 1993년 4월 일

발 행 : 1993년 4월 일

발행처 : 통 일 원

(교 류 협 력 국)

전화 736-7205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인쇄처 : 금 강 문 화 인 쇄

전화 279-6901

〈비매품〉